#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499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:김원중 의원(1명) 찬 성 자:강석주 김경후 김동

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성흠제, 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 , 윤기섭, 이봉준, 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 임만균, 최민규, 한 신, 허 훈, 홍국표 의원(35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 (행정안전부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조정위원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,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의2에 따라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조).
- 나.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재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).
- 다.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재심의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함(안 제3조제1항).
- 라.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38조"를 "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38조 및 제38조의2"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심의한다"를 "심의하되, 다수인관련민원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민원 처리에 관한법률」 제32조제3항제4호"를 "법 제32조제3항제4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중 "「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」 제36조제8항"을 "시행령 제36조제8항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7명"을 "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.

제7조제2항 중 "위원 4명 이상"을 "재적위원 과반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안 제1조(목적) ----- 「민원 처리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민원 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 다) 제34조, 「민원 처리에 관한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법률 시행령 | (이하 "시행령"이라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 • 한다) 제38조 및 제38조의2----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 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 제2조(기능) ① ------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----- 심의하되,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 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 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. 1. ·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----- 법 제32조제3 의 타당성 여부와 「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| 제32조제3항제4 항제4호----호에 따른 재심의

- 4. · 5. (생략)
- 6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6. 시행령 제36조제8항-----령」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 된 복합민원
- 7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3조(구성)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 제3조(구성) ① -----시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- ② (생략)
- 제6조(회의의 구성) ① 위원회의 회 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명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
  - ② (생략)

<신 설>

- 4. · 5. (현행과 같음)
- 7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다만,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 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 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 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 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.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6조(회의의 구성) ① -----
  - ----- 위원장을 포 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----
  -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 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이 되지 아니한다.

# 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김원중 의원

담 당: 오희선 과장

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

접 수 일: 2023.02.01.

회 신 일: 2023.02.02.

내용문의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, 안 제7조 제1항에따라 현재 운영중인 민원조정위원를 활성화 함에따라 추가 비용 발생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  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- 3. 미첨부 사유
  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    - 추계의 전제
      - 안 제6조 제1항에따라 기존 7명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인 것으로 함(4명 추가 인원에 대하여만 추계)
      - 안 제7조 제1항과 민원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취지에따라 현재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분기별로 개최(3회 추가 개최)함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
      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  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  - 나. 상세 비용추계 결과
    - 총 비용(합계) ≒ 33,550천원(연평균 6,71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현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계
세입		-	-	-	-	1-1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민원조정위원회 구성 (안 제6조 제1항 등)	6,710	6,710	6,710	6,710	6,710	33,550
	소계(b)	6,710	6,710	6,710	6,710	6,710	33,550
총비용(b-a)		6,710	6,710	6,710	6,710	6,710	33,550

-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총 운영비 ≒ 33,550천원
  - 산출방식 : 연간(2024~2028) 비용의 합산 : 6,710천원×5년
  - 연간 위원회 운영비 =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
≒ 5,600천원 + 1,110천원

⇒ 6,710천원

•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=[추가 위원수  $\times 1$ 인당 회의참석 수당  $\times$  1년간 회의개최 횟수(기추진회의 에 인원추가)] +[추가 위원수  $\times 1$ 인당 회의참석 수당  $\times$  1년간 회의개최 횟수(개최회의수 추가)]

=  $(4명 \times 200천원 \times 1회) + (8명 \times 200천원 \times 3회)$ 

= 800천원 + 4,800천원 = 5,600천원

- 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」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
- ※ 수당 비지급대상을 안 제3조제 1항 등에따라 내부 공무원인 부시장, 행정국장, 시의원 등 3인 으로 가정함
- 연간 업무추진 경비 = [추가 위원 수  $\times$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$\times$  연간 회의 개최 횟수(기추진회 의에 인원추가)] +[추가 위원 수  $\times$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$\times$  연간 회의 개최 횟수(개최회의수 추가)]
  - = (4명 × 30천원 × 1회) +(11명 × 30천원 × 3회)
  - = 120천원 + 990천원
  - = 1,110천원
- 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 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류동균

® 02-2180-7952

e-mail: rooster72@seoul.go.kr